

1. 용역 계약 설명서

1. 용역명세서

가. 용역명 : 국도3호선 외 6개 노선 영주국토 관내 도로일상정비 용역

나.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국도3호선 외 6개 노선 영주국토 관내 도로일상관리 용역 설계서로서 휴일 전일 근무시간 이후부터 휴일 이후 근무시작 시간까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및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민원 등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일상관리 작업을 시행하여 도로이용자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본 설계도서에 의거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함.

다. 용역위치

- 국도3,5,28,31,34,35,36호선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관리구간
- 관리연장 : 420.4km

라. 용역개요

- 도로일상관리 : 1식

2. 일 반 시 방 서

II. 일반 시방서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과업지시서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도로일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1.1.3 범위 우선 준수

수급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1.1.4 용역 감독관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관의 업무

1.2.1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나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 (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용역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용역 착수 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설계도서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나.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 (3) 수급자가 우리사무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사무소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1.3.2 책임한계

-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2) 수급자는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3.3 응급조치

- (1) 수급자는 도로관리 작업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수급자는 도로관리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용역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사무소 및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5 민원예방

수급자는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 (1) 수급자는 도로관리 비상적업 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 (2) 용역감독관은 우리사무소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자는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 (3) 수급자는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5) 도로관리작업장 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6) 수급자는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수급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8)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서 의거 관할 경찰서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증빙서류를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계 적용 기준

- 1.5.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2년 하반기 노임단가
- 1.5.2 환율 : 2022. 발표한 매매 기준환율 적용
- 1.5.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지자료 물가지정보지, 기준유가(최저가)[2022.1. 석유공사(오피넷) 발표]
- 1.5.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1-6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관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착수신고서

(1) 착수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우리사무소에 제출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다. 착공내역서

라, 장비보험(특약)가입 관련서류

마. 산재보험가입 관련서류, 근로자제해 보장보험 가입 관련서류 등

바. 기타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사항

1.3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3.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도로관리비상대기 일지, 일상도로관리 작업일지, 도로긴급복구 일지 등

1.3.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도로관리비상대기 일지, 도로일상관리 작업일지, 도로긴급복구 일지 등

1.4 용역사진

용역 준공 시 작업안전차량, 일상관리비상대기, 일상관리작업, 도로긴급복구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시 “준공서류” 에 첨부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서류

1.7.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자가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2 안전일지

수급자가 자체관리 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특별 시 방 서

III. 특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4) 실 투입한 도로관리 비상작업, 도로관리 비상대기, 도로긴급복구 등의 일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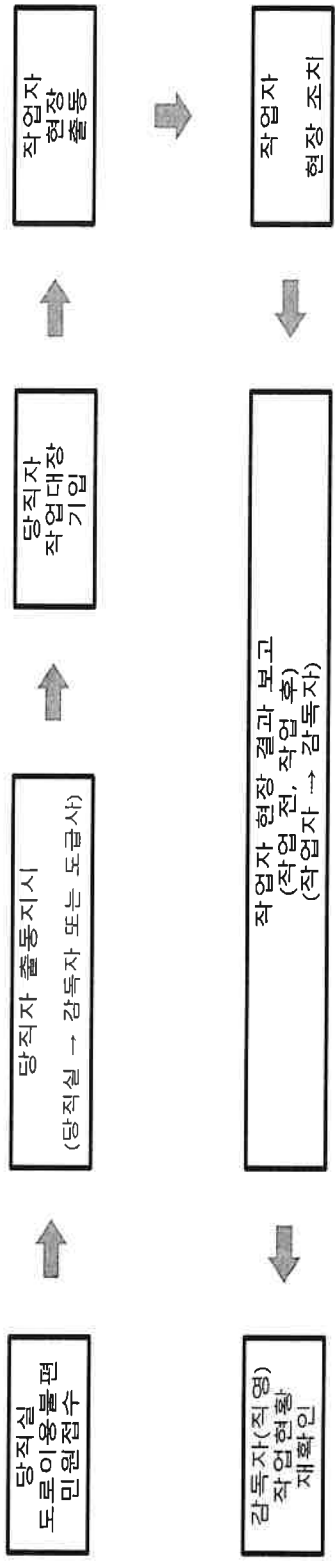
2. 도로일상관리 작업

1. 운영방안

가. 작업비용 : 계약금액 기준으로 추후 정산

나. 실시방안

도로일상관리 관련 민원 등이 발생 될 경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당직실 및 용역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도로관리 일상 작업을 실시하고 직영작업 및 공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선 임시 안전 조치 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다. 배치방안

1) 비상대기 지역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 내

2) 발주청 지원

- 자재 및 작업도구 : 도로관리 자재 등(포장보수자재, 청소도구, 마대자루, 안전시설(안전간판, 라바콘) 등

라. 현장작업자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1) 작업안전차량(사인보드 부착), 라바콘, 안내간판, 안내조치 후 작업 실시

2) 도로일상관리 작업 시에는 작업안전차(사인보드 부착, 작업차 겸용) 2대 배치하고 후미 작업안전차 운전자가 후방에서 차량신호를 하고 도로관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일상관리 작업으로 발생하는 낙하물, 쓰레기, 폐기물 등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야적장으로 반입한다.

영주국토관리사업에 관한 규정

수시영자	202 : 끝
작성시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편작성
작성지시내용	국도28호선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도로상 낙하물 제거
작성차량 및 인원	1대 작성차량(사인보드 탑재) : 2대, 작업인부 : 1인
작성시간	202 : 끝~202 (작성 시간 끝)

도로영주국토관리사업영지